

의안번호	제 33 호	의 결 사 항
의결 년월일	2004. 9 . .	

#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사 천 시 장
제출년월일	2004. 8. 4 .

#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	2004. 9. 7
제출자	사천시장

## 1. 의결주문

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 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

## 2. 개정이유

대진고속도로와 창선·삼천포대교 개통 후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우  
리시 관문인 사천IC 주변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 
편의를 제공하고,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의 일부시설물을 민자유치로 기부  
채납토록 하여 시의 재정 부담 경감과 민간인 참여를 촉진시켜 관광산업  
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관광지원시설의 위치 및 규모 변경
- 현행 3필지 18,389㎡ → 26필지 27,872㎡

## 4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## 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발체 : 따로붙임
- 나. 예산조치 : 36억원
- 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실
- 라. 기 타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
- 2) 입법예고(2004. 7. 20 ~ 2004. 8. 10)결과 제출된 의견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3조(위치 및 규모) 관광지원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별표1과 같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## 관광지원시설의 위치 및 규모

연 번	위 치	규모(㎡)	비 고
1	사천시 대방동 765-3	12,608	
2	사천시 대방동 765-14	1,848	
3	사천시 대방동 765-15	3,933	
4	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20-2	6	
5	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9-7	390	
6	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9-1	456	
7	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9-5	94	
8	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4-13	2,136	
9	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9-3	172	
10	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4-11	215	
11	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4-10	63	
12	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4-6	181	
13	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28-1	1,032	
14	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4-12	63	
15	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4-9	162	
16	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4-8	50	
17	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5-21	41	
18	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5-20	61	
19	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0	565	
20	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5-28	2,373	
21	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5-22	159	
22	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278-21	54	
23	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278-19	89	
24	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9-6	699	
25	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15-7	360	
26	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15-8	62	

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3조(위치 및 규모) 관광지원시설의 <u>위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위치는 사천시 대방동 765-3번지, 765-4번지, 765-9번지에 둔다.</p> <p>2. 규모는 부지면적 18,389평방미터로 <u>한다.</u></p>	<p>제3조(위치 및 규모) 관광지원시설의 <u>위치 및 규모는 별표1과 같다.</u></p>

## 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재정법 제75조(기부채납) ①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한다.  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(기부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)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당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.

②건물 기타 시설물의 기부를 채납한 경우에는 그 건물 기타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제1항의 사용료에 합산한다. 다만,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제1항의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지의 평가액은 사용·수익허가 당시의 가액에 의하되, 그 가액은 제9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.

### 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(공유재산의 종류)제1항제1호

1. 행정재산 : 다음 각목의 재산

가. 공용재산 :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·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

나. 공공용재산 :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

다. 기업용재산 :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)제2호 당해 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에 건물, 구거·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

2.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재산의 무상사용·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